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6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0.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0. 3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제출일자: 2019. 10. 18.
- 회부일자: 2019. 10. 18.
- 검토기간: 2019. 10. 21. ~ 10. 25.

2. 제정이유

- 보훈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 ~ 제3조)
- 나. 위원의 제척, 위원장의 직무, 임기, 위원의 해촉(안 제4조 ~ 제7조)
- 다. 회의, 의견 청취(안 제8조 ~ 제9조)
- 라. 재정 지원, 수당 등(안 제10조 ~ 제11조)

4.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5. 검토의견

- 현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실질적 보상은 물론 다양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달서구는 국가의 시책에 맞춰 예산(국·시비 매칭 포함) 편성 등 다양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책을 마련·시행 중.
 - 현재 달서구는 상위 법률에 부응하는 한편으로 별도 관련 구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정을 통해 이들 국가보훈대상자(및 보훈단체)에 대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구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기존의 보훈정책에 더하여 “구 보훈정책의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보훈 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 및 보훈 중요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등(안 제2조)에 대해 구청장에게 자문(諮詢)¹⁾ 역할을 할 보훈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을 새로이 구성(안 제1조)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²⁾.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제5조).
- 다음으로 동 조례안에 규정된 위원회 자문 내용(안 제2조)이 현재 구가 보훈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위임받은) 보훈정책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사항(안 제2조)의 구체화 및 특히 안 제2조제4호의 “보훈 중요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조정’을 요하는 내용의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1)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크게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으로 그 성격을 구분(「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하고 있음.

2) 현재 전국에서 동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경북 칠곡군뿐이며, 동 조례안은 「칠곡군 보훈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構成)과 동일함.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현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현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현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현자의 업적선양